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조합과 채무자(이하 "차주, 할인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이하 "수표"를 포함한다.)을 조합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조합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여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손실보존준비금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한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조합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조합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과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조합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하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5조 [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지급보증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 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약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곧 조합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을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파산법, 회회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출자금(출자증권 포함), 부금 등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 포함)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출자금, 공제부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4.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가 당해채무 전기간(기한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해 채무는 그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다만, 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동 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압류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개시가 있는 때

3. 제5조, 제17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계약서 제출, 위 .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산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7.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에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⑤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6조 제1항, 제14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로 제공된 출자금 기타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임의로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항 제2호 및 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제1호, 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②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제6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조합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경우에도, 제7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조합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채무와 채무자의 출자금, 공제부금 등의 채권과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사전 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같기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상계 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출자금, 공제부금 등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조합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조합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출자금, 공제부금 기타의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 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출자금, 출자부금 등의 채권과 관련된 증서, 증권 등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조합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조합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출자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조합 채권보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조합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조합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조합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감·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제·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여,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조합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조합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조합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작성 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조합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조합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조합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약관을 사무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